화약관련 검사규정

(606)

화약관련 검사규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장 검 사

제3조(검사의 종류)

제4조(검사방법)

제5조(화약류 검사 기준)

제6조(검사 승인 및 변경사항 통보)

제7조(검사시행 기간)

제8조(검사원의 민원예방)

제9조(검사신청)

제10조(검사일 통보)

제11조(검사의 표시) (삭제 2004.11.18)

제3장 기술지원비

제12조(기술지원비)

제4장 기 타

제13조(기타)

부 칙

화약관련 검사규정

1999. 1. 1	제정	2017.11.01	개정
2001. 2.14	개정	2020.04.28	개정
2004.11.18	개정	2020.11.27	개정
2006.10.18	개정	2021.04.16	개정
2007.12. 3	개정	2021.06.28	개정
2011. 1. 1	개정	2021.12.21	개정
2014. 3.31	개정	2022.08.12	개정
2015. 1. 1	개정	2024.12.19	개정
2015.12.29	개정		
2016. 8. 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3조, 제52조(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에 관련된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 제조업의 허가에 따른 제조시설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의 허가에 따른 수입화약류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 저장소 설치허가에 따른 저장소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 안정도 시험
5.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에 따른 저장소 및 제조시설
6.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조사연구

제2장 검 사

제3조(검사의 종류) 화약류의 검사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시설 기술검토 (개정 2004.11.18)
2. 제조시설 안전진단 (개정 2004.11.18)
3. 삭제(2006.10.18)
4. 저장소 기술검토 (개정 2004.11.18)

5. 저장소 안전진단 (개정 2004.11.18)

6. 삭제(2006.10.18)

7. 화약류 안정도 시험

8. 화약류 감정 및 기술검토 (신설 2004.11.18, 개정 2017.11.1, 2020.4.28)

9. 화약사용 안전진단(개정 2004.11.18, 2020.4.28, 2022.8.12)

10. 발파진동 및 소음측정(개정 2004.11.18, 2020.4.28, 2022.8.12)

11. 삭제(2006.10.18)

12. 행정관청이 요청하는 화약관련 감정 및 기술지원(개정 2020.4.28)

13. 기타 화약류 해당 여부 검토(신설 2022.8.12)

제4조(검사방법) 화약류 관련 검사는 검사대상인 모든 화약류 관련시설 및 화약류에 대하여 실시한다.

① 검사결과서와 관련된 민원인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개정 2004.11.18)

② 화약류 검사는 협회 또는 각 관련 검사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 제조시설 및 각 저장소 안전검사, 화약류 관련 안전진단은 결과서를 작성한다.

④ 검사를 한 때에는 각 관련 대장에 기록을 유지하고 검사를 받은 관련업체 및 관련 행정관청에 통보한 후 문서 규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⑤ 검사 업무 규정에 적용하는 모든 화약류 관련 검사는 현장 검증 및 각종 측정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각종 시설에 따른 검사는 기준에 미달될 경우 조정 가능한 것은 기술지원을 통하여 개선한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5조(화약류 검사 기준) 화약류 관련 검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시설 검사기준

가. 시행령 제8조(제조시설의 기준)·제9조(제조기술의 기준)

2. 저장소 검사기준

가. 시행령 제29조 (화약류 저장소 위치·구조 및 설비)

나. 시행령 제30조 (화약류 저장소와 보안물건 간의 보안거리)

다. 시행령 제31조 (지상1급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라. 시행령 제32조 (지상 복토식 1급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마. 시행령 제33조 (지하1급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바. 시행령 제34조 (2급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사. 시행령 제35조 (3급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아. 시행령 제36조 (수중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자. 시행령 제37조 (실탄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차. 시행령 제38조 (꽃불류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카. 시행령 제39조 (장난감용 꽃불류 저장소와 도화선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타. 시행령 제40조 (간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파. 기타 시행령 제41조(피뢰장치)·제42조(흙둑)·제43조(간이흙둑)·제44조(방폭벽)·제45조(저장량) 등

3. 화약류 안정도 시험 검사기준

화약류 안정도 시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라'목의 검사기준은 총포화약법에 따른 안정도시험이 아닌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4.12.19.)

가. 시행령 제59조 (안정도 시험)

나. 기타 시행령 제44조(화공품 안정도 시험의 시험기 등)·제60조(유리산 시험)·제61조(내열시험)·제62조(가열 시험)·제63조(시험기 등)·제64조(안정도 시험의 보고) 등 (개정 2004.11.18)

다. 시행규칙 제4조 (장난감용 꽃불류)·기타 화공품(위해성 여부 검토)

라. 민원인이 제출한 시험 내용(시료 채취 기준, 시험 방법, 합격 기준 등)(신설 2024.12.19.)

4. "발파진동 및 소음측정"과 "화약사용 안전진단" 기준(개정 2007.12.3, 2022.8.12) 법 제52조(사업)에 의하여 화약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조사, 소음 및 진동 측정, 행정관청 위탁 기술지원 검사, 기타 화약류 안정도 검사 등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검사 실시

5. 위 1호 내지 4호에서 정한 검사기준 외 화약류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재해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신설 2021.4.16,

개정 2021.12.21)

제6조(검사 승인 및 변경사항 통보) 안전진단 및 기술검토 결과서를 해당 민원인 등에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18)

제7조(검사시행 기간) 검사는 일과시간외에도 필요시에는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검사원의 민원예방) 검사원은 공정하게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검사신청) ①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정기검사는 해당 경찰관서와 협조하에 실시하며, 수시검사는 일자와 관계없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 우선순위는 검사 접수순에 의한다.

③ 신청일 또는 수량에 변동이 있을 경우, 검사 3일전 까지 협회에 변동사항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청은 검사 종류별 신청서(별지 서식 제1호 내지 제7호)에 의한다.

다만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기술지원검사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6.10.18)

⑤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않을 경우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04.11.18)

⑥ 접수된 민원업무의 보완서류 제출 등에 의해 민원의 주요부분에 변경이 있는 경우(제조시설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위치 이동·구조 변경, 제조기술의 변경 등)에는 별개의 민원업무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2.8.12)

제10조(검사일 통보) 검사일정이 결정되면 해당 경찰관서 및 민원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즉시 통지해 주어야 한다.

제11조(검사의 표시) (삭제 2004.11.18)

제3장 기술지원비

제12조(기술지원비) ① 정관 제33조 제3호에 의거 기술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14, 2020.11.27)

② 화약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술지원비는 다음과 같다.(부가세 별도)
(개정 2020.11.27, 2021.4.16)

1. 제조시설 기술검토 : 150만원(1품목당) (신설 2006.10.18 / 개정 2015.12.29)

2. 제조시설 안전진단 : 150만원(1품목당) (개정 2015.12.29)

3. 저장소 기술검토 : 105만원 (신설 2006.10.18 / 개정 2015.12.29)

4. 저장소 안전진단 : 105만원 (개정 2015.12.29)

5. 화약사용 안전진단 : 150만원
(개정 2006.10.18, 2015.12.29, 2020.24.28, 2022.8.12)

6. 발파진동 및 소음측정 : 90만원
(개정 2006.10.18, 2015.12.29, 2020.4.28, 2022.8.12)

7. 화약류 안정도 시험 기술지원(법정 수수료와 관련 실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4.11.18, 2015.12.29, 2020.11.27,2021.4.16, 2021.12.21)

가. 회원

1) 기본 기술지원비 : 45만원
다만, 2품목 이상 시 품목당 15만원씩 추가되며, 수입일자 또는 수입허가번호가 다른 경우 별 건으로 산정

2) 화공품(뇌관류, 실탄 및 공포탄, 신호용 화공품, 꽃불류, 장난감용 꽃불류 제외)
가) 수입품의 경우 : 수입원가의 1%
나) 제조품의 경우 : 생산자 공급가격의 1%
다) 다만, 제조·수입회비 징수 미적용 제품의 경우에는 제2항제7호 “나”의 비회원에게 적용하는 기술지원비를 받는다.

나. 비회원

1) 수입품의 경우 : 수입원가의 2%

2) 제조품의 경우 : 생산자 공급가격의 2%

다. 화약류 안정도시험 기술지원비가 “가”목 1)의 기본 기술지원비(45만원) 보다 적을 경우 기본 기술지원비를 적용한다.

8. 화약류 감정 및 기술검토 : 15만원(1품목당)
(개정 2015.12.29, 2017.11.1, 2020.4.28)

9. 기타 화약류 해당여부 검토 : 150만원(1품목당). 연구·분석·자료조사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초과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신설 2021.12.21)

③ 검사의뢰 신청 후 수수료 또는 기술지원비는 협회 계좌에 송금하여야 하며,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자체심의를 거쳐 해당 수수료 또는 기술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0.11.27, 2021.12.21)

④ 검사비용이 검사수수료를 초과할 경우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른 실비정산을 한다.

⑤ 민원업무처리 결과 부적합 또는 불합격되어 재신청할 경우에는 신규 신청으로 간주하여 기술지원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2017.11.1)

제4장 기 타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1999. 1. 1)

①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 14)

① 이 규정은 200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 18)

①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18)

①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3)

①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1)

①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3. 31)

①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2015. 1.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제외한 다른 규정 중 “팀”을 “부서”로, “총무팀장”을

“운영지원처장”으로, “기획감사팀”을 “기획감사실”로, “교육홍보팀”을 “교육홍보처”로, “회원관리팀”을 “회원사무처”로, “연구개발팀”을 “연구개발처”로, “총포검사팀”을 “총포안전처”로, “화약감정팀”을 “화약안전처”로 한다.

부 칙(2015. 12. 2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12.29.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기) 제12조(기술지원비)제2항은 2016. 3. 1.이후 접수하는 기술지원 신청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 8. 1)

① 이 규정은 2016.8.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1)

① 이 규정은 2017.1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28)

① 이 규정은 2020.5.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27)

① 이 규정은 2020.12.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4. 16)

① 이 규정은 2021.7.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28)

① 이 규정은 2021.7.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2. 21)

① 이 규정은 2022.1.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8. 12)

①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2. 19.)

①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호 서식) (개정 2017.11.1, 2022.8.12)

<table>
<tr><td colspan="3" rowspan="4">화약류 제조시설
기술 검토 신청서</td><td>선결</td><td></td><td></td><td>지시</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접수</td><td>일자</td><td></td><td rowspan="3">결
재·공
람</td><td></td><td></td></tr>
<tr><td>번호</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처리부서</td><td>화약안전처</td><td></td><td></td></tr>
<tr><td colspan="2">담 당 자</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① 신 청 인/
회 사 명</td><td>성 명/
(회사명)</td><td colspan="6">(전화번호: fax:)</td></tr>
<tr><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② 의뢰 사유</td><td colspan="7"></td></tr>
<tr><td>③ 검토 대상</td><td colspan="7"></td></tr>
<tr><td>④ 위 치</td><td colspan="7"></td></tr>
<tr><td>⑤ 허가 사항</td><td colspan="7"></td></tr>
<tr><td>⑥ 기 타</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8">위와 같이 화약류 제조시설 기술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귀하</td></tr>
<tr><td colspan="8">1. 구비 서류(아래 서류 각 1부)
가. 보안물건 배치도, 지적도, 제조시설 설계도 등
나. 사업계획서
다. 위해예방계획서
라. 관련 허가증 사본
마. 입금 확인서 (예 : 사본)
1) 계좌은행 : 하 나 은 행 2) 계좌번호 : 168-910004-01104
3) 계 좌 명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4) 금 액 : 1,650,000원(1품목당, 부가세 포함)
바. 기타(기술검토에 필요한 서류 등)
2. 기타(작성 방법 등)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홈페이지 참조</td></tr>
</table>

210㎜×297㎜

(제2호 서식) (개정 2017.11.1, 2022.8.12)

<table>
<tr><td rowspan="5">화약류 제조시설
안전진단 신청서</td><td>선결</td><td colspan="2"></td><td>지시</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접수</td><td>일자</td><td></td><td rowspan="4">결재·공람</td><td></td><td></td></tr>
<tr><td>번호</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처리부서</td><td>화약안전처</td><td></td><td></td></tr>
<tr><td colspan="2">담 당 자</td><td></td><td></td><td></td></tr>
</table>

① 신 청 인/ 회 사 명	성 명/ (회사명)	(전화번호: fax:)
	주 소	
② 의뢰 사유		
③ 검토 대상		
④ 위 치		
⑤ 허가 사항		
⑥ 기 타		

위와 같이 화약류 제조시설 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귀하

1. 구비 서류(아래 서류 각 1부)
 가. 보안물건 배치도, 지적도, 제조시설 설계도 등
 나. 사업계획서
 다. 위해예방계획서
 라. 관련 허가증 사본
 마. 입금 확인서 (예 : 사본)
  1) 계좌은행 : 하 나 은 행
  2) 계좌번호 : 168-910004-01104
  3) 계 좌 명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4) 금 액 : 1,650,000원(1품목당, 부가세 포함)
 바. 기타(안전진단에 필요한 서류 등)
2. 기타(작성 방법 등)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홈페이지 참조

210㎜×297㎜

(제3호 서식) (개정 2017.11.1, 2022.8.12)

<table>
<tr><td colspan="3" rowspan="4">화약류 저장소
기술 검토 신청서</td><td>선결</td><td></td><td></td><td>지시</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접수</td><td>일자</td><td></td><td rowspan="3">결재·공람</td><td></td><td></td></tr>
<tr><td>번호</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처리부서</td><td>화약안전처</td><td></td><td></td></tr>
<tr><td colspan="2">담 당 자</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① 신 청 인/
회 사 명</td><td>성 명/
(회사명)</td><td colspan="6">(전화번호: fax:)</td></tr>
<tr><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② 저장소형식
및 동수</td><td colspan="2"></td><td>③ 안전시설
(흙둑 등)</td><td colspan="3">□별표 8(저장소 지붕 높이)
□별표 9(지붕 높이의 5/4 이상)
□기타 ( )</td></tr>
<tr><td colspan="2">④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⑤ 위 치</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⑥ 허가사항</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⑦ 기 타
(의뢰사유)</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8">위와 같이 화약류 저장소 기술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귀하</td></tr>
<tr><td colspan="8">1. 구비 서류(아래 서류 각 1부)
가. 도면(보안물건 배치도, 지적도, 건물배치도면, 단면도, 건물설계도면 등)
나. 관련 허가증 사본
다. 입금 확인서 (예 : 사본)
1) 계좌은행 : 하 나 은 행 2) 계좌번호 : 168-910004-01104
3) 계 좌 명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4) 금 액 : 1,155,000원(부가세 포함)
라. 기타(기술검토에 필요한 서류 등)
2. 기타(작성 방법 등)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홈페이지 참조</td></tr>
</table>

210㎜×297㎜

(제4호 서식) (개정 2017.11.1)

<table>
<tr><td colspan="3" rowspan="4">화약류 저장소
안전진단 신청서</td><td>선결</td><td></td><td></td><td>지시</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접수</td><td>일자</td><td></td><td rowspan="4">결재·공람</td><td></td><td></td></tr>
<tr><td>번호</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처리부서</td><td>화약안전처</td><td></td><td></td></tr>
<tr><td colspan="2">담 당 자</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① 신 청 인/
회 사 명</td><td>성 명/
(회사명)</td><td colspan="6">(전화번호: fax:)</td></tr>
<tr><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② 저장소형식
및 동수</td><td colspan="2"></td><td>③ 안전시설
(흙둑 등)</td><td colspan="4">□별표 8(저장소 지붕 높이)
□별표 9(지붕 높이의 5/4 이상)
□기타 ( )</td></tr>
<tr><td>④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td><td colspan="7"></td></tr>
<tr><td>⑤ 위 치</td><td colspan="7"></td></tr>
<tr><td>⑥ 허가사항</td><td colspan="7"></td></tr>
<tr><td>⑦ 기 타
(의뢰사유)</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8">위와 같이 화약류 저장소 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귀하</td></tr>
<tr><td colspan="8">1. 구비 서류(아래 서류 각 1부)
가. 도면(보안물건 배치도, 지적도, 건물배치도면, 단면도, 건물설계도면 등)
나. 관련 허가증 사본
다. 입금 확인서 (예 : 사본)
1) 계좌은행 : 하 나 은 행 2) 계좌번호 : 168-910004-01104
3) 계 좌 명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4) 금 액 : 1,155,000원(부가세 포함)
라. 기타(안전진단에 필요한 서류 등)
2. 기타(작성 방법 등)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홈페이지 참조</td></tr>
</table>

210㎜×297㎜

(제5호 서식) (개정 2017.11.1, 2021.6.28)

<table>
<tr><td rowspan="5">화약류 안정도 시험
신 청 서</td><td>선결</td><td colspan="2"></td><td>지시</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접수</td><td>일자</td><td></td><td rowspan="4">결재·공람</td><td></td><td></td></tr>
<tr><td>번호</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처리부서</td><td>화약안전처</td><td></td><td></td></tr>
<tr><td colspan="2">담 당 자</td><td></td><td></td><td></td></tr>
</table>

① 신 청 인/ 회 사 명	성 명/ (회사명)	(전화번호: fax:)
	주 소	
② 제 조 국		
③ 제 조 일 자		
④ 품목 및 수량		
⑤ 허 가 사 항		
⑥ 의 뢰 사 유		

위와 같이 화약류 안정도 시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귀하

※ 구비 서류

1. INVOICE,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2. 제품설명서 1부
3. 허가증 사본 1부
4. 입금 확인서 사본 1부

가. 계좌은행 : 하 나 은 행 나. 계좌번호 : 168-910004-01104

다. 계 좌 명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라. 금 액 : 협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gesta.or.kr/data/law04.php?kind=law&kind_sub=04)

210㎜×297㎜

(제6호 서식) (개정 2017.11.1, 2020.4.28. 2022.8.12)

<table>
<tr><td rowspan="5">화약사용 안전진단</td><td>선결</td><td></td><td></td><td>지시</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접수</td><td>일자</td><td></td><td rowspan="4">결재·공람</td><td></td><td></td></tr>
<tr><td>번호</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처리부서</td><td>화약안전처</td><td></td><td></td></tr>
<tr><td colspan="2">담 당 자</td><td></td><td></td><td></td></tr>
</table>

① 신 청 인/ 회 사 명	성 명/ (회사명)	(전화번호: fax:)
	주 소	
② 공 사 명		
③ 현장 주소		(전화번호: fax:)
④ 의뢰 사유		
⑤ 현 장 주 변 상 황		
⑥ 기 타		

위와 같이 화약 사용에 따른 안전 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귀하

※ 구비 서류
1. 화약류 사용허가증 사본 1부
2.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 면허증 사본 1부
3. 현장 도면 1부
4. 입금 확인서 사본 1부
가. 계좌은행 : 하 나 은 행 나. 계좌번호 : 168-910004-01104
다. 계 좌 명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라. 금 액 : 1,650,000원(부가세 포함)

210㎜×297㎜

(제7호 서식) (개정 2017.11.1, 2020.4.28, 2022.8.12)

<table>
<tr><td colspan="3" rowspan="4">발파진동 및 소음측정</td><td>선결</td><td></td><td></td><td>지시</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접수</td><td>일자</td><td></td><td rowspan="4">결재·공람</td><td></td><td></td></tr>
<tr><td>번호</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처리부서</td><td>화약안전처</td><td></td><td></td></tr>
<tr><td colspan="2">담 당 자</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① 신 청 인/
회 사 명</td><td>성 명/
(회사명)</td><td colspan="6">(전화번호: fax:)</td></tr>
<tr><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② 공 사 명</td><td colspan="7"></td></tr>
<tr><td>③ 현장 주소</td><td colspan="7">(전화번호: fax:)</td></tr>
<tr><td>④ 의뢰 사유</td><td colspan="7"></td></tr>
<tr><td>⑤ 현 장
주 변 상 황</td><td colspan="7"></td></tr>
<tr><td>⑥ 기 타</td><td colspan="7"></td></tr>
<tr><td colspan="8">위와 같이 화약 사용에 따른 안전 진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귀하</td></tr>
<tr><td colspan="8">※ 구비 서류
1. 화약류 사용허가증 사본 1부
2.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 면허증 사본 1부
3. 현장 도면 1부
4. 입금 확인서 사본 1부
가. 계좌은행 : 하 나 은 행 나. 계좌번호 : 168-910004-01104
다. 계 좌 명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라. 금 액 : 990,000원(부가세 포함)</td></tr>
</table>

210㎜×297㎜